

의안번호	2216923
의 퇴 인	이주희의원
회 답 일	2026. 4. 2.
추계번호	26C0990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억원(연평균 1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자립지원 시행 의무화 (안 제32조의3)	3,600	600	600	600	600	6,000	1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의3(자립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※ 현행: 조치를 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2조의3(자립지원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부처 의견을 참고하여, 자립정착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%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32조의3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지급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- 다만,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자립지원수당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도 지급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소요로 볼 수 없고, 본 추계에서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 -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인원을 산정함에 있어, 최근 자립지원수당 지급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이 예상되는 첫 해(2027년)는 기존 퇴소 인원을 포함하여 400명을, 추계기간 중 2028년~2031년의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퇴소 인원을 100명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실적: ('22) 97명 → ('23) 174명 → ('24) 274명 → ('25) 401명
 -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25년 기준 경기(30명), 울산(4명), 부산(3명) 및 제주(3명)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였음. 따라서 해당 지역 인원을 모두 더한 40명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추계기간 중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분에서 제외함

[표 2] 자립지원 시행 의무화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자립정착금 지급대상(A, 명)	400	100	100	100	100	—
현재 지급자 수(B, 명)	40	40	40	40	40	—
추가되는 지급대상 (C=A-B, 명)	360	60	60	60	60	—
자립정착금 단가 (D, 백만원)	10	10	10	10	10	
합계 (E= C×D, 백만원)	3,600	600	600	600	600	5,400
국비(E×50%)	1,800	300	300	300	300	3,000
지방비(E×50%)	1,800	300	300	300	300	3,000

주: 현재 지급자 수의 경우 2025년 기준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 숫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로 추계기간 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